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51766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4. 11. 4 선고 2014나20077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합517667 판결

전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 선고 2014. 1. 24.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2,012,972원 및 그 중 38,08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252,731,964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각 2013. 7. 2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가 2012. 11. 6. 체결한 매매계약을 324,079,4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324,079,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이 2012. 11. 5. 체결한 매매계약을 74,985,58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74,985,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별지 실용신안권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D이 2013. 1. 14.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특허청 2013. 1. 14. 접수번호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9. 4. 6. F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A과 보증원금 2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4.

6.(이후 2013. 4. 5.로 변경)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2009.

4. 7.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 보증'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8. 5. 다시 피고 A과 보증원금 3,760만 원, 보증기한 2012. 8. 3.(이후 2013. 8. 2.로

변경)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2011. 8. 5. 신한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2 보증'이라고 한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 초과하면 연 16%, 2012. 12. 1. 이후는 일률적으로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3. 2. 14.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11.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3. 3. 29. 제2 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38,088,800원을, 2013. 4. 5. 제1 보증에 기하여 우리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252,939,634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4. 5. 우리은행 대위변제금 중 207,670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290,820,764원(= 38,088,800원 + 252,939,634원 - 207,670원)이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192,1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

1)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6.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2012. 11. 19. 접수 제1698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5.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12. 3. 접수 제345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은 2013. 1. 14. 환기용 건식에어덕트에 대한 실용신안권(등록번호 G)을 피고 D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이하 1 내지 3 부동산과 실용신안권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재산 처분'이라고 한다).

라. 1, 2, 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1, 2, 3 부동산에는 2011. 8. 22. 접수 제126354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A이 위와 같이 1, 2, 3 부동산을 처분한 후인 2011. 11. 19. 하나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A,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구상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92,012,972원[= 남은 대위변제금 합계 290,820,764원 + 채권보전비용 1,192,140원 + 회수한 대위변제금 207,67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68원(= 207,670원 × 0.12 × 1/36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38,088,8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3. 29.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252,731,96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3. 7.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신용보증약정 체결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피고 A이 이 사건 각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한 2012. 11월부터 약 석 달이 지나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재산 처분 당시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3. 3. 29. 및 2013. 4. 5. 결국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각 재산처분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 갑 제7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하나은행, 수원시 장안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재산처분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가) 적극재산

2013. 6. 7. 현재 1, 2, 3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042,466,750원[= 854,796,750원{1 부동산 640,320,000원 + 2 부동산 172,912,500원(에이동) 및 41,564,250원(비동)} + 3 부동산 187,670,000원]이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과거인 2012. 11월경에도 같은 가격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각 재산처분 당시 1, 2, 3 부동산에 설정된 하나은행의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625,937,839원(= 2011. 8. 22.자 대출 원금 5억 9,600만 원 + 이자 3,314,739원 + 중도상환수수료 6,084,098원 + 2012. 8. 22.자 대출 원금 20,171,387원 + 이자 161,702원 + 중도상환수수료 20,539,002원)이었으므로, 1, 2, 3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은 416,528,911원(= 1,042,466,750원 - 625,937,839원)이 된다. 여기에 실용신안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이 사건 각 재산처분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가액이 된다.

나) 소극재산(1, 2, 3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는 제외한다)

이 사건 각 재산처분 당시 피고 A은 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92,012,972원[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② I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17,626,439원, ③ 대출금채무 합계 8,429,000원(= 수원축산농협 180만 원 + 농협중앙회 153만 6,000원 + 씨티은행 289만 3,000원 + 신한카드 220만 원)을 합한 총 718,068,411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가액을 감안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1, 2 부동산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증인 J의 일부 증언과 을나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와 거래관계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의 처인데, 피고 A은 2011. 11월경부터 I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가 누적되어 2012. 10. 31.에는 합계액이 417,626,439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 A은 J에게 '1, 2 부동산을 매수하여 3 부동산과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3 부동산을 처분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J은 물품대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1, 2 부동산을 매수하되, 닥트 제조 공장 및 그 부지인 위 부동산을 당장은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 A에게 임대하기로 한 사실, 매매대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8,500만 원은 물품대금채권 일부와 상계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25,937,839원은 인수하였으며 잔금 139,062,161원은 물품대금채권 일부와 상계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사실, J은 매매계약 후 I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7,000만 원, 지인에게서 빌린 5,000만 원, 1, 2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B 명의로 대출받은 5억 8,000만 원(이 때문에 피고 B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으로 2012. 11. 19.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은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2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 부동산 매매는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J에 대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상계 등으로 피고 A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없이 소유권만 피고 B에게 넘어간 상태가 되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결과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 B는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으로 I 주식회사와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2 부동산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은 2013. 6. 7. 현재의 시가보다도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으나, 특정한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매매였고, 피고 A이 현실적으로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아 매매대금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지 않은 이상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애초에 1, 2 부동산에서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담보 부분)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채권자가 아니었으므로,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여도 1, 2 부동산 매매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매매대금으로 I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변제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사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결국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3 부동산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매각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3 부동산을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 2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3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던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C이 3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피고 B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 2, 3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하나은행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자 피고 C은 2012.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91,965,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A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3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함으로써 3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었고, 반면 피고 C은 대여금채권 일부를 우선변제받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 A이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C은, 피고 A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 2, 3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위 91,980,000원은 피고 A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 부동산 매매대금만으로도 3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굳이 3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않고도 피고 A 자신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3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고, 위 91,980,000원이 피고 A의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4) 실용신안권 처분행위 피고 A이 2013. 1. 14. 당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실용신안권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실용신안권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 B,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

피고 B는 1, 2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 C

피고 A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부수적으로는 대여금 일부를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이 시가와 차이가 없으며, 부동산등기부에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외에 어떠한 부담도 없어 피고 A의 다른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한 점, 3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해한다거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

2) 피고 B의 선의 인정 여부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이

1년 동안 I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합계액이 약 4억 1,000만원이 된 상황에서 물품대금을 일부나마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1, 2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매수 경위에 비추어 매매 당시 피고 A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 2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자기 채권 일부를 상계하고 3 부동산과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 A이 3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추가로 변제받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1, 2 부동산 매매로 자기 채권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이상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C의 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 B에 의하여 1, 2, 3 부동산에 공동으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3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고도 피고 A이 3 부동산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3 부동산의 시가(1억 8,767만 원)가 피고 C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액(1억 5,120만 원)을 상회하므로 그 차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인데, 3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9,198만 원)을 먼저 피고 A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만을 자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C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장소는 3 부동산이 아닌 3 부동산 매수 당시의 주소지인 것을 고려할 때, 피고 C이 2012. 12. 5.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읍다 제5호증(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3 부동산 매수 동기를 설명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3. 6. 7. 현재 1, 2 부동산의 가액은 854,796,750원, 3 부동산의 가액은 187,670,000원이고 사해행위 당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625,937,83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 2 부동산과 3 부동산이 각각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 1, 2 부동산 : 513,253,425원(= $625,937,839 \times 854,796,750 / 1,042,466,75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3 부동산 : 112,684,413원(= $625,937,839 \times 187,670,000 / 1,042,466,750$)

다) 그렇다면, 1, 2 부동산 및 3 부동산의 가액 중 각 공동담보 부분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 1, 2 부동산 : 341,543,325원(= $854,796,750\text{원} - 513,253,425\text{원}$)

○ 3 부동산 : 74,985,587원(= $187,670,000\text{원} - 112,684,413\text{원}$)

라)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시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92,012,972원 및 그 중 38,08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252,731,964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각 2013. 7. 2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6.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324,079,433원[= $292,012,972\text{원} + 38,088,800\text{원} \times (117\text{일} / 365\text{일} \times 0.12 +$

$136\text{일}/365\text{일} \times 0.2) + 252,731,964\text{원} \times (110\text{일}/365\text{일} \times 0.12 + 136\text{일}/365\text{일} \times 0.2)]$ 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A, B 사이의 1, 2 부동산 매매계약을 1, 2 부동산 공동담보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324,079,4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324,079,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C 사이의 3 부동산 매매계약을 3 부동산 공동담보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74,985,58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74,985,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실용신안권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A, D 사이의 실용신안권 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서 특허청 2013. 1. 14. 접수번호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영환

판사이영림

판사노한동

별지